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1441호(號) 1931(昭和 6)년 10월 24일 토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516호(號)

1930(昭和 5)년 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74호(號)(조선국유철도 화물운송규칙 [朝鮮國有鐵道貨物運送規則]) 중(中) 1931(昭和 6)년 11월 1일부터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31(昭和 6)년 10월 24일

조선총독(朝鮮總督) 우가키 가즈시게(宇垣一成)

별표(別表) 화물할인임률표(貨物割引賃率表) 국선(局線)과 내지(內地) 간(間) 발착(發著: 부산 경유[釜山經由])의 부문[部] 중(中) 면사(綿糸)의 항(項)의 다음에 아래[左]와 같이 추가(追加)함.

생사(生糸) 옥사(玉糸)	대구(大邱), 대전(大田), 조치원(烏致院), 경성(京城), 사리원(沙里院), 평양(平壤), 함흥(咸興), 진해(鎭海), 전주(全州), 전남광주(全南光州)	히가시 요코하마(東橫濱), 요코하마항(橫濱港), 미나토가와(湊川), 오노하마(小野濱), 고베항(神戸港), 효고(兵庫)	소화물급(小貨物級) 차 급(車 扱)	발착역(發著驛) 간(間) 2할(割) 감(減)	1 보통임률(普通賃率)에 의하여 취급(取扱)하는 착역경유(著驛經由) 수출(輸出)한 것에 한하여 하송인(荷送人)에 대(對)하여 기수운임(既收運賃)과 본 임률(本賃率)에 의(依)한 운임(運賃)과의 차액(差額)을 환급(還給)함으로 함 2 전항(前項)의 환급(還給)은 운임(運賃) 현불(現拂) 또는 후불(後拂)의 것에 한(限)함 3 전(前) 각호(各號)의 외(外) 별도(別途)로 정(定)한 바에 의(依)하여 취급(取扱)함으로 함
------------------	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